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나6779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나6779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1589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변론종결 2022. 4. 20.

판결선고 2022. 5. 25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4. 22. 선고 2020가단1589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3. 8. 체결된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- 제1심판결 2면 18행부터 21행까지의 “마.”항 부분을 “마. D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,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441호로 D의 G, H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,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2020. 4. 17. 제3채무자 H에게, 같은 해 5. 6. 제3채무자 G에게 각 도달하였으며, 그 후 원고는 위 같은 법원 2020타채2799호로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, 위 명령은 2020. 5. 22. 제3채무자 H에게, 같은 해 6. 8. 제3채무자 G에게 각 도달하였다.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3면 6행의 “[인정근거]”에 “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”을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4면 3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“이 사건에서 공동임대인의 1인인 H에 대해서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공동임대인인 G, H에게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

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(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,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(대법원 2010. 11. 30.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), 비록 원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동임대인 중 G에게는 피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기는 하나,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이 피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임을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”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하정, 판사 진현지, 판사 김수정